

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(제44조의2제2항 관련)

1. 전문인력 구성기준

구 분	자격기준 등
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·치료 책임자 및 진료 수의사	1.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·치료 책임자: 수의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. 진료수의사: 수의사로서 제1호에 따른 책임자를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일 것
야생동물 질병연구자	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, 생물학, 동물학, 축산학, 의학, 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1인 이상일 것
야생동물 구조 및 관리업무 담당자	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3인 이상일 것

2. 시설 기준

구 분	세부기준	
부 지	· 전체면적: 1,000㎡ 이상 · 건물: 전체면적의 20%(200㎡) 이상	
시 설	진료실	· 임상병리, 약제투여 및 그 밖의 치료시설을 갖추는 것
	수술실	· 수술 관련시설을 갖추는 것
	영상진단실	· 방사선 촬영장비를 갖추는 것
	입원실	· 진료실과 구분·운영하되, 종에 따라 적절한 실내 케이지 및 시설을 갖추는 것
	교육실	· 야생동물보호 홍보·교육관련 강의, 전시 및 영상 상영시설을 갖추는 것
	사체 및 유전자원 보관실	· 냉동·냉장시설을 갖추는 것
	먹이준비실	· 상하수도시설을 갖추는 것
	재활시설	· 적정 면적확보 및 자연적응 훈련 가능시설을 갖추는 것
	창고시설	· 먹이 및 자재보관용 냉동·냉장시설을 갖추는 것
	격리·차폐시설	· 소독과 격리가 가능한 1개의 실(室)을 갖추는 것

3. 장비 구비기준

구 분	세부기준
구조차량	· 야생동물 구조·운송에 적합한 차량
재 질	· 나무, 종이, 금속 또는 플라스틱
운 반 장 비	<p>모형도(예시)</p>

운반상자(예시)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야생동물의 이동공간을 보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다양한 크기로 제작
	대형 맹수류 (곰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크기: 가로 1.8m, 세로 0.9m, 높이 0.9m 재료: 합판(15mm), 철판(1.2mm), 각재(45mm), 평강 및 ㄱ평강(3×40mm), 윤형강(15mm) ※ 인체 위해 예방을 고려
	그 밖의 맹수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크기: 가로 1.2m, 세로 0.6m, 높이 0.6m 재료: 합판(12mm), 철판(0.9mm), 각재(45mm), 평강 및 ㄱ평강(3×40mm), 윤형강(12mm) ※ 나무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, 창살을 나무판 등으로 덧댄 운반상자도 사용이 가능하며, 이 경우 못이나 그 밖의 돌출물 등을 사전제거할 것
포획장비 (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접용 장갑(짧고 얇은 장갑 및 길고 두꺼운 장갑 각 1켤레 이상) 동물 이송상자 바닥 깔개 고글 등 눈 보호장치 안대용 후드 또는 눈가리개용 장갑, 양말 및 주머니 멸균생리식염수 및 일반 구급약품상자(해독제 포함) 포획용 그물, 올가미 막대(Control Pole), 안전 집게(Grasper), 마취총, 파이프 마취총(Blow Gun), 막대 주사기 [Jab Stick(Pole Syringe)] 디지털카메라, 비디오 등 컴퓨터 작업 및 동영상 저장장치 	
진료장비 (각 호의 장비를 각각 하나 이상 갖출 것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료대 수술대 수술등 흡입마취기 환측상태감시기(ECG, Pulse oximeter 등) 수액펌프(인퓨전펌프) X-ray 영상진단장비 세트 초음파진단기 광학현미경 혈액검사장비 세트 원심분리기 집중치료시설(ICU, Intensive Care Unit) 세균 배양기 고압멸균소독기(Autoclave) 자외선 소독기 이비인후과 유닛(ENT UNIT) 네블라이저(Nebulizer) 검이-검안 장비 세트(otoscopy, 검안경 및 안압측정기 등) 일반외과 수술기구 세트 정형외과 수술기구 세트 미세수술장비(루페 등) 석션기 의료소모품 일체 	